

품목분류 CASE 1 배터리용 철강제 큐브

판정번호
H356254

물품 정보

용도

- 배터리 수납용 철강제 큐브
- 내부 랙(rack)에 배터리 고정

구조

- 전선·커넥터·소켓 등 각종 전기 부품 내장

쟁점 HS



제 7309 호

철강제 용기

제 8507 호

축전지(부분품 포함)

제 8537 호

전기 배전용 보드·기반

CBP 판단

- 쟁점물품에는 전기 에너지의 저장·공급을 수행하는 구성요소(배터리 셀·팩·모듈) 미포함
- 배터리 케이스(배터리의 부분품)는 음극·전극·전해질 등 배터리 내부 부품을 보호하는 하우징 부분을 의미

쟁점물품은 배터리를 내부 랙에 수납하는 장치로, 배터리의 부분품(케이스 등)에 해당하지 않음

- 전선·커넥터 등 각종 전기 송전 요소 내장
- 전기의 배전(전기 부품을 통해 전기가 전달되는 장비 네트워크) 기능 수행

제8537호 전기 배전용 보드·기반 분류 요건 충족

미국 HS-CODE 결정

8537.20

전기 배전용 보드·기반

품목분류 CASE 2 페그세타코플란

판정번호
H321337

물품 정보

용도

- 희귀 면역질환 치료용 의약품질
- 순수 고체 상태의 원료

성분

- 펩타이드 (Peptide 1603)에 폴리에틸렌글리콜 (PEG)을 결합(페그화)하여 생성

쟁점 HS



제 3907 호

폴리에테르·폴리에스테르

제 3002 호

혈액 분획물과 면역물품

제 3003 호

혼합 의약품

CBP 판단

- 제3002호에 분류되는 면역물품은 면역 과정에 직접 관여하는 펩타이드에만 적용
- 쟁점물품은 보체계(혈액 내 면역 단백질 집합체) 억제 기능을 수행하나, 면역 과정을 직접 조절하지 않음

제3002호 면역물품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음

- 단순 혼합물이 아닌 화학 반응으로 생성된 단일 화학물질
- 제2934호 물품의 페그화 유도체는 제3907호에 분류

페그화된 펩타이드 (제2934호 물품)로서 제29류가 아닌 제3907호 (폴리에테르)로 분류

미국 HS-CODE 결정

3907.20
그 밖의 폴리에테르

품목분류 CASE 3 핀치 볼트 요크

판정번호
N359979

물품 정보

용도

- 양측면에 이어홀이 있는 U자형 요크
- 유니버설 조인트의 구성 부품

수입

- 완제품 및 미완성품의 두 가지 형태로 수입
- 미완성품은 추가적인 기계 가공을 거쳐 완제품으로 제조 필요

CBP 판단

- 미완성품이 완제품의 본질적 특성을 갖춘 경우 완제품과 동일한 품목번호로 분류(통칙 제2호 가목)
- 본 사례의 미완성품은 ① 수입 시점에 이미 완성된 **요크의 형상**을 갖추고 있으며, ② **완성품으로 제조하기 위한 용도** 외에는 사용 불가

미완성품은 완제품의 본질적 특성을 갖추고 있음

- 요크(미완성품 포함)은 유니버설 조인트의 구성 부품으로 **유니버설 조인트 부분품** 구동축 연결 및 고정 역할 수행

제8483호(전동축 등)의 부분품 소호로 분류

쟁점 HS



제 7326 호

철강제 제품

제 8483 호

전동축·기어·샤프트커플링
(유니버설 조인트 포함)

미국 HS-CODE 결정

8483.90

품목분류
CASE 4 충전기 패키지

판정번호
N360577

물품 정보

용도

- 이식형 신경자극기(의료기기) 전용 충전 세트

구성

- 충전기: 의료기기 충전 및 무선 데이터 송수신 기능
- 도킹 스테이션: 충전기 충전 및 거치
- 휴대용 케이스: 구성품 수납

쟁점 HS



제 8504 호

정지형 변환기

제 8517 호

데이터 송수신용 기기

CBP 판단

- 세트에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는 충전기는 의료기기 충전(제8504호) 및 데이터 송수신(제8517호) 기능을 모두 수행함
- 서로 다른 호에 해당하는 복수의 기능을 수행하는 복합기기는 주된 기능을 기준으로 품목분류를 결정
- CBP는 두 기능이 동등하게 중요하다고 판단
- 충전 기능이 없으면 의료기기를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, 데이터 송수신 기능이 없으면 배터리 상태 확인 및 기기 제어가 불가능함

미국 HS-CODE 결정

8517.62

데이터 송수신용 기기

쟁점물품의 두 기능이 해당하는 호 중
번호가 가장 마지막인 제8517호로 최종 분류

품목분류
CASE 5 이동식 보관 유닛

판정번호
N360308

물품 정보

용도

- 철강제 이동식 보관 유닛
- 건설 현장·작업 구역 등에 설치

구조

- 플랫폼(분해 후 평평하게 포장) 형태로 운송 후, 사용 장소에서 조립
- 크레인 인양용 고리 및 지게차 포크용 포켓 부착

쟁점 HS



제 8609 호

컨테이너

제 9406 호

조립식 건축물

CBP 판단

- 제8609호 컨테이너는 화물 운송 목적으로 설계되고 트럭 트레일러·철도 화차 등 특정 운송수단에 적합하도록 제작
- 쟁점물품은 평상형 트럭(flatbed truck)에 적재되어 운송되므로 특정 운송수단에 의한 운송에 해당하지 않음
- 또한 리프트용 고리 및 지게차 포크용 포켓은 특정 운송수단 전용으로 설계된 구조에 해당하지 않음
- 쟁점물품은 공장에서 제작된 후 분해 상태로 운송되어 현장에서 재조립 후 창고로 사용되므로, 제9406호 조립식 건축물의 정의에 부합

제8609호 컨테이너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며,
조립식 건축물로 보아 제9406호로 최종 분류

미국 HS-CODE 결정

9406.90

조립식 건축물

품목분류 CASE 6 버섯 배지

판정번호
H347082

물품 정보

용도

- 식용 버섯 생산을 위한 버섯 배지 (기반 재료)

제조

- 버섯 종균의 생장에 필요한 물질 (물·톱밥·밀기울)을 혼합·배양

쟁점 HS



제 0602 호

버섯의 종균

제 0709 호

기타 채소 (신선·냉장 상태)

신청인 주장

- 쟁점물품은 버섯 종균을 완전히 배양한 상태로, 종균보다는 식용 버섯(제0709호)에 보다 가까운 물품
-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자실체 (일반적인 모양의 버섯)를 형성할 준비가 완료된, 수확 직전의 완성품

CBP 판단

- "식용"이란 섭취에 적합하거나 안전한 것, 또는 식품(food item)으로 정의
- 쟁점물품은 수입 당시에 아직 식품으로 섭취하기에 부적합
- 품목분류는 수입 시점의 물품 상태를 기준으로 결정

식품으로 볼 수 없는 버섯 배지는 제0602호로 분류

미국 HS-CODE 결정

0602.90

버섯의 종균

품목분류
CASE 7 오일 추출 기계

판정번호
N359842

물품 정보

쟁점 HS



용도

- 농산물에 함유된 식물성 오일을 기계식 압착을 통해 추출하는 설비

제8479 호

기타 기계류
(고유 기능을 가진것)

구성

- 쿠커
- 원료투입 호퍼
- 스크류 샤프트
- 압착 케이지
- 기어박스
- 모터
- 오일 잔류물 배출구
- 오일 수집 시스템

CBP 판단

- 쟁점물품은 여러 구성요소가 결합된 설비 라인으로, 수입 시점에는 각 구성요소가 분리된 상태임
- 전체 구성품은 모두 단일 기능(오일 추출) 수행에 필수적인 요소로, 제16부 주4에서 규정하는 기능 단위 기계의 요건을 충족
- 제8479.20호에는 동물성·식물성·미생물성 지방이나 기름의 추출용·조제용 기계류가 분류
- 원료를 압착하는 방식의 오일 추출 기계도 동 호에 포함

쟁점물품(설비 라인)은 단일 기능(오일 추출)을 수행하는 기계로서 제8479.20호에 분류



미국 HS-CODE 결정

8479.20

기름 추출용 기계류

품목분류
CASE 8 이산화탄소 흡수기

판정번호
N359872

물품 정보

용도

- 환자의 호흡가스 내 이산화탄소를 제거하는 이산화탄소 흡수기

구조

- 마취 및 호흡 치료용 의료기기에 탈부착 가능한 구조(일회용)
- 내부에는 이산화탄소 흡착 물질 충전

쟁점 HS



제 8421 호

기체용 여과기나 청정기

제 9019 호

그 밖의 치료용 호흡기기

CBP 판단

- 의료기기의 부분품이 특정 호(제84류 등)에 해당하는 경우, 제90류 주 제2호에 따라 해당 호로 우선 분류

제84류 내 특정 호로의 분류 가능 여부 검토 필요

- 제8421호의 기체용 여과기 및 청정기에는 기체로부터 유해 물질을 화학적 방식에 의해 제거하는 화학식 여과기가 포함됨

기체 여과기가 분류되는 제8421호에 우선 분류



미국 HS-CODE 결정

8421.39

기체용 여과기

원산지 CASE 1 인쇄회로기판 조립체

판정번호
H344034

물품 정보

용도

- 보드 위에 다양한 전자 부품이 조립된 인쇄회로기판(PCB)

CBP 판단

- 서로 다른 원산지의 부품을 조립하여 완성품을 제조한 경우, **실질적 변형 여부**는 각 부품이 원래의 정체성을 상실하고 새로운 완성품에 일체적으로 통합되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
- 미국에서 수행된 SMT(표면실장기술) 및 PTH((Pin-Through-Hole) 공정에는 **숙련된 전문 인력과 특수 장비가 필요함(단순 조립 공정이 아님)**
- 개별 부품들은 완제품 제조 과정에서 각각의 정체성을 상실하고, 단순 보드에서 기능성 조립품으로 전환되어 새로운 명칭·성질·용도를 가진 물품을 구성함

SMT 및 PTH 공정은 실질적 변형을 구성하므로, PCBA의 원산지는 해당 공정의 수행국으로 판단

제조 공정



- 부분품 원산지: 미국·중국·스웨덴·EU
- 제조 공정(미국): 전공정 / SMT / PTH 공정

전공정 마킹·정전기 제거·패널 설계

SMT 공정

솔더 페이스트 도포·디스펜싱·
부품 실장·리플로우 솔더링·검사

PTH 공정

솔더링·패널 분리·검사

미국 원산지 결정

SMT 및 PTH 공정
수행국(미국)을
비특혜원산지로 판단



원산지 CASE 2 평판디스플레이 모듈

판정번호
N359986

물품 정보

용도

- 노트북에 결합하여 디스플레이를 구성

부품

- TFT-LCD 패널 셀
- IC 드라이버
- PCBA(인쇄회로기판 조립체)
- FPC(연성회로기판)
- 백라이트 유닛

CBP 판단

- 제조 공정이 두 국가 이상에서 수행된 경우, 최종적으로 해당 제품에 실질적 변형을 일으킨 공정의 수행국을 원산지로 판단
- 대만에서 제조된 **패널 셀**은 최종 제품인 디스플레이 모듈의 **명칭·특성·용도**를 결정하는 **핵심 구성 요소**로 판단
- 중국에서의 후공정은 패널 셀 제조 단계에서 이미 확정된 제품의 **명칭·특성·용도**를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수준에 이르지 못함

색상과 화면을 구성하는 **패널 셀**이 모듈의 **핵심 요소**

제조 공정



- 패널 셀 제조: 대만
- PCBA 제조 및 후공정: 중국

패널 셀 제조

어레이 공정·컬러필터 공정·셀 공정·터치 디스플레이 공정

PCBA 제조

- 기판 상에 전기 부품 조립 (표면실장기술)

후공정

- 기판 위에 패널과 칩 부착
- 기판 보호용 물질 도포
- 품질 검사, 포장 및 선적

미국 원산지 결정

패널 셀의 **원산지(대만)**를 모듈의 비특혜원산지로 판단